|  |  |  |
| --- | --- | --- |
|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규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37호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규정》이 2011년 1월 13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1년 3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 절차를 규율하여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보장하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행정처벌안건 처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행정처벌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적법하여야 하며 법률, 법규, 규장 적용이 정확하고 처리결과가 합리, 공정하고 법 집행문서 사용이 정확하고 규범화 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계통 내 부문지간의 안건처리 협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행정처벌안건을 처리할 때 기타 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조사 요청을 받은 부문은 그에 협조, 협력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후 기타 부문의 진일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본급 안건 처리기구와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행정처벌 안건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보강하여야 한다.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처리하는 중대 행정처벌 안건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행정처벌 안건 처리는 기피제도를 실시한다. 안건 처리인원, 심리인원 및 청문인원이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기피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전 항에서 규정한 인원의 기피 신청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기피여부는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결정한다.  **제2장 관 할**  **제7조** 행정처벌 안건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한다.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본 행정구역 외에서 조사 및 증거취득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는 관련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급별로 공동한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보고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관련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기술 감독부문 지간에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한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관할권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또는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권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필요 시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하는 행정처벌 안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중대하거나 복잡한 행정처벌 안건을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처리하는 안건이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관할권이 있는 품질기술 감독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을 받는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관할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한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관할을 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스스로 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처리하는 안건이 기타 행정관리부문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타 유관부문에 이송하여야 한다.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발견한 불법행위가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안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처벌의 일반절차**  **제12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감독 검사직권에 의거하거나 또는 제보, 투서, 기타 부문의 이송, 상급 부문의 지정 등 두트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단서에 대하여는 발견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조사 확인을 실시하고 아울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 테스트, 검정, 감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 항에서 규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입안 안건은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안건을 종결지어야 한다.  **제13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조사하거나 증거를 취득할 때 안건 처리인원은 최소 2인이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행정 법 집행증서를 제시하고 안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건 처리인원은 안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안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서증, 물증, 영상자료, 증인의 증언, 당사자의 진술, 현장기록 및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결과 등은 검증을 거친 후 안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한다.  **제15조** 현장검사는 안건 처리인원이 실시하며 법정검사, 테스트, 검정, 감정기구의 인원이나 관련 기술인원을 요청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현장검사는 당사자가 현장에 출두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 출두를 거절하더라도 검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처리인원은 기록 중에 관련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장검사 상황은 현장검사 기록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당사자가 의견을 밝힌 후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시에는 촬영이나 녹화를 하는 등 방식으로 현장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제16조** 안건 처리인원은 당사자나 관련 증인에 대한 질문 조사를 실시할 때 개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질문하기 전에 질문대상자의 신분증명서를 수집, 대조확인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질문 조사는 기록을 작성하여 질문대상자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페이지마다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보완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정정 또는 보완 부분은 질문대사자의 서명,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안건 처리인원은 안건과 관계되는 원시적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삼아야 한다. 원시 증명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본, 복사본 또는 수록본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증거 제공자가 그에 “원본 대조필”이라 명기하여야 한다.  수집한 증거는 증거 제시일자, 증거출처를 밝혀야 하며, 안건 처리인원, 증거 제공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안건 처리인원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나 관련 증인에게 안건과 관련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19조** 안건 조사에서 발견한 모조 용의제품은 모조대상 기업에 넘겨 감별할 수 있다.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검증을 거친 후 기업이 제시한 감별 증명자료를 안건 사실의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증명자료를 제시한 기업은 그 증명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아울러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증거를 수집할 때 샘플 추출방식을 취할 수 있다.  추출한 샘플이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자격을 구비한 기구에 의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결과는 마땅히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규장에서 재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재검사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불법행위 용의와 관련되는 증거에 대해 선행 등기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행 등기보존 조치를 취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선행 등기보존 증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7일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처리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선행 등기보존 조치는 스스로 해제된다.  (1) 상황에 근거하여 지체 없이 기록, 복제, 촬영, 녹화 등 증거 보존조치를 취한 경우  (2)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봉인, 압류, 차압 등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한 경우  (3)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불법사실이 성립되지만 법적 봉인, 압류, 차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 등기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행정처벌 안건을 처리할 때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차압, 압률, 봉인 등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행정적 강제조치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적 강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해제 시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조사 및 증거 취득 과정에서 당사자가 조사를 거절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자가 상응하는 법 집행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등의 상황이 나타난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법 집행문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상황을 밝히고 아울러 녹음, 녹화 등 영상자료로 해당 상황을 증명하여야 한다.  필요 시 안건 처리인원은 제3자를 요청하여 증인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범죄 용의가 있는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기타 조직이 종료함과 아울러 권리의무 승계자가 없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건 처리기구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종료하고 안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  **제26조** 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행정처벌안건 심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의 집단심리 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행정처벌안건의 심리는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안건 심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법사실, 처벌의 의거와 이유,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 변호, 청문 등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를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변호로 인해 그에게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제28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해 심사 대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건 심사 대조는 《품질기술 감독 행정처벌안건 심리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9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에서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제작하고 당사자의 이름이나 명칭 및 주소, 불법사실과 증거, 처벌의 의거와 이유, 처벌의 종류와 정도, 처벌 이행방식과 기한, 구제도경 및 기한, 처결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명칭과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행정적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처벌결정서는 작성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이 규정 제7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행정적 처벌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는 기한은 법률, 법규, 규장이나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률, 법규, 규장이나 기술규범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기한은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30일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하며 아울러 품질기술 감독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안건 관할이나 기타의 법에 따라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보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인 경우 하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지체 없이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보고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행정적 처벌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입안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이 특별히 복합하여 연장하여도 처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청문, 공고, 검사, 테스트, 검정 또는 감정을 하거나 또는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 항에서 규정한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장 행정처벌의 청문절차**  **제33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아래의 행정처벌결정 중의 하나를 내리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청문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한 익일부터 당사자는 3일 내에 청문을 신청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1) 조업 정지 정돈을 명령  (2)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발급한 허가증을 말소  (3) 보다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  전 항 (3)호에서 규정한 보다 큰 금액의 벌금 기준은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 등 관련 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 등 관련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 이상을 보다 큰 금액의 벌금 기준으로 한다.  **제34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설립한 행정처벌안건 심리위원회 산하의 판공실(이하 안건심리판공실이라 함)은 청문의 구체적 조직업무를 처리한다.  **제35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안건심리판공실은 당사자의 기본상황, 청문 청구사항 및 사실, 이유를 안건서류에 기록하고 아울러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청문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당사자의 청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아래의 요구에 따라 청문을 조직한다.  (1) 청문 주최인과 서기를 확정한다. 청문 주최인은 품질기술 감독부문의 주요 책임자가 본 안건 외의 인원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하며, 청문 서기는 안건심리판공실 관련 인원이 담당한다.  (2) 청문 참가자를 확정한다. 청문 참가자에는 안건 처리인원과 당사자가 포함된다. 당사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을 청문회에 참가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청문에 참가할 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청문 주요내용을 확정한다. 안건심리판공실은 청문 주최인이 제출한 당사자의 기본상황, 불법사실, 증거, 처벌 의견 및 청문 신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청문일시와 장소를 확정한다. 안건심리판공실은 청문회를 소집하는 7일 전에 청문회 소집일시, 장소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자가 청문회를 소집하기 전에 청문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건서류에 해당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안건은 마땅히 공개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청문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주최인이 청문회 기율을 선포한다.  (2) 청문 참가자의 이름, 나이, 신분을 대조하고 청문 권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3) 안건 처리인원이 당사자의 불법사실, 증거 및 처벌의견을 내 놓는다.  (4) 당사자가 변호, 대질한다.  (5) 주최인이 청문회 종료를 선포한다.  **제39조** 청문 주최인은 청문회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청문 참가자가 법에 따라 진술, 변호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아울러 청문 참가자에 대한 질문권리를 향유한다.  당사자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변호, 대질권리를 포기하고 청문회에서 퇴장하는 경우 주최인은 청문회 종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0조**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기록은 당장에서 청문 주최인과 청문 참가자의 대조 확인을 거친 후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안건심리판공실은 청문기록과 안건 관련 자료를 함께 행정처벌안건 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문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벌결정은 무효로 된다.  **제5장 행정처벌의 간이절차**  **제42조** 불법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여 법에 따라 공민에게 50위안 이하,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게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주는 행정처벌은 당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 안건 처리인원이 당장 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물증, 서증, 당사자의 진술, 현장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통일적인 당장 처벌결정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당장 처벌결정서에는 당사자의 불법사실, 행정처벌의 의거, 벌금액수, 일시, 장소 및 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건 처리인원과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한 후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인원은 해당 상황을 밝혀야 한다.  **제44조** 안건 처리인원이 당장 처벌을 실시하고 벌금을 바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안건 처리인원이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당장 처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3조, 제27조, 제56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장 행정처벌의 집행과 안건 종결**  **제46조** 행정처벌결정서가 일단 송달되었다면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 기간에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매일 벌금액수의 3%에 따라 벌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기한은 당사자의 법정 기소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180일 내로 한다.  **제49조** 당사자가 재정상황이 어려워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50조** 몰수 물품의 처분은 《품질기술 감독 몰수물품 관리 및 처분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1조** 법에 따라 등기보존이나 행정적 강제조치를 해제하고 안건 관련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안건 관련 물품의 소유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수령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안건 관련 물품을 상납하거나 법에 따라 경매한 후 그 소득을 국고에 상납한다.  **제5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 기간에 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2)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집행을 중지하도록 재정한 경우  (3) 집행중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53조**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기타 조직이 종료되었거나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행정처벌결정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제5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질기술 감독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안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행정처벌결정을 집행 완료한 경우  (2)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을 거쳐 집행을 완료한 경우  (3) 행정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안건을 관할권이 있는 부문이나 사법기관에 이송한 경우  (5) 조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6) 행정처벌결정의 집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55조**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아래의 안건을 종결지은 후 15일 내에 직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상급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감독하는 안건  (2) 관할이 지정된 안건  (3)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 영향이 있는 안건  (4) 사법기관에 이송한 안건  (5) 인민정부 행정재심의나 행정소송을 거쳐 종결된 안건.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본급 인민정부로부터 이관 받은 안건이나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 영향이 있는 안건은 지체 없이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 안건 처리과정에서 형성된 자료는 마땅히 보관서류 관리 규정에 따라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기간 및 송달**  **제57조**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품질기술 감독부문이 지정하는 기간이 포함된다.  기간은 시, 일, 월, 연으로 계산하며, 개시되는 시와 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하루가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후의 첫날을 기간만료 일자로 한다.  기간에는 도중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 집행문서를 기간만료 전에 우송에 넘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8조** 법 집행문서를 송달 시에는 송달 수령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신자는 송달 수령증서에 수신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송달 수령증서에 서명한 수령 일자가 송달일자로 된다.  **제59조** 법 집행문서를 송달 시에는 직접 수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공민이고 또한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성년가족이 수령증서에 서명하며, 수신인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조직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조직의 위탁대리인, 수신 책임자가 수령증서에 서명한다. 수령일자는 송달일자로 된다.  **제60조** 수신자가 법 집행문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조직 등 제3자의 증인을 현장에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 수령증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기재한 후 송달인, 증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법 집행증서를 수신자의 주소에 유치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치 송달은 녹음, 녹화 등의 방식으로 송달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1조** 법 집행문서의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층 품질기술 감독부문이나 관련 기층 조직에 위탁하여 송달할 수도 있고 우송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  우송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송 수령증서에 기재한 수신일자가 송달일자로 된다.  **제62조** 이 규정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송달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공고송달은 수신자 원 주소지에 공고를 부착할 수도 있고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신문,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등 신문매체를 통해 공고를 할 수도 있으며, 공고를 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바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고송달은 안건 서류에 공고송달 원인과 경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63조** 법률, 법규가 수권한 품질기술 감독 법 집행기구의 행정 처벌안건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이 규정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5조**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국가기술감독국이 1990년 7월 16일에 공포한 《기술감독 행정안건 처리절차 규정》, 1995년 12월 8일에 공포한 《기술감독 행정안건 현장처벌 규정》, 1996년 9월 18일에 공포한 《기술감독 행정안건 청문업무 규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质量技术监督行政处罚程序规定**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令第137号  《质量技术监督行政处罚程序规定》已经2011年1月13日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7月1日起施行。  局 长  二〇一一年三月二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质量技术监督行政处罚程序，保障质量技术监督部门有效实施行政管理，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等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各级质量技术监督部门办理行政处罚案件，适用本规定。法律、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三条**　办理行政处罚案件，应当做到事实清楚，证据确凿，程序合法，法律、法规、规章适用准确，处罚合理、公正，执法文书使用正确、规范。  **第四条**　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加强系统内部门之间办案协作。  办理行政处罚案件时，需要其他部门协助的，可以提出协查请求；接到协查请求的，应当予以协助和配合。发现违法行为需要由其他部门进一步处理的，应当及时通报。  **第五条**　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加强对本级案件承办机构和下级质量技术监督部门办理行政处罚案件的监督检查。  上级质量技术监督部门对下级质量技术监督部门办理的重大行政处罚案件，可以进行督办。  **第六条**　质量技术监督部门办理行政处罚案件实行回避制度。案件承办人员、审理人员和听证人员与案件有直接利害关系的，应当回避。  当事人或者前款规定人员本人申请回避，应当在行政处罚决定作出之前提出，由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作出是否回避的决定。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是否回避由上一级质量技术监督部门决定。  **第二章 管 辖**  **第七条**　行政处罚案件由违法行为发生地的县级以上质量技术监督部门管辖。  有管辖权的质量技术监督部门在本行政区域之外开展调查取证等活动的，应当通报相关质量技术监督部门。必要时逐级报请共同的上一级质量技术监督部门做好协调工作。相关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予以协助和配合。  **第八条**　质量技术监督部门之间对管辖权发生争议的，报请共同的上一级质量技术监督部门指定管辖。  有管辖权的质量技术监督部门由于特殊原因不能行使管辖权或者上级质量技术监督部门认为需要指定管辖的，可以指定管辖。  **第九条**　上级质量技术监督部门在必要时，可以直接办理下级质量技术监督部门管辖的行政处罚案件。  对重大、复杂的行政处罚案件，下级质量技术监督部门可以报请上级质量技术监督部门办理。  **第十条**　质量技术监督部门发现办理的案件不属于本机关管辖的，应当将案件移送有管辖权的质量技术监督部门。  受移送的质量技术监督部门对管辖权有异议的，应当报请共同的上一级质量技术监督部门指定管辖，不得再自行移送。  **第十一条**　质量技术监督部门发现办理的案件属于其他行政管理部门管辖的，应当依法移送其他有关部门。  质量技术监督部门发现违法行为涉嫌犯罪的，应当依照有关规定将案件移送司法机关。  **第三章 行政处罚的一般程序**  **第十二条**　质量技术监督部门对依据监督检查职权或者通过举报、投诉、其他部门移送、上级部门交办等途径发现的违法行为线索，应当自发现之日起15日内组织核查，并决定是否立案。  检验、检测、检定、鉴定等所需时间，不计入前款规定期限。  立案案件应当报请质量技术监督部门负责人批准，并按照本规定程序办理，直至结案。  **第十三条**　质量技术监督部门在调查取证时，案件承办人员不得少于两人，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行政执法证件，并记录在案。  **第十四条**　案件承办人员应当对案件进行全面调查，收集认定案件事实的证据。  书证、物证、视听资料、证人证言、当事人陈述、现场笔录以及检验、检测、检定或者鉴定结果等，经查证属实后作为认定案件事实的证据。  **第十五条**　现场检查由案件承办人员进行，可以邀请法定检验、检测、检定、鉴定机构的人员或者有关技术人员参加。现场检查应当通知当事人到场。当事人拒不到场的，不影响检查的进行，承办人员应当在笔录中载明情况。  现场检查情况应当如实记入现场检查笔录，由当事人签署意见，并签名或者盖章。必要时，可以采取拍照、录像等方式记录现场情况。  **第十六条**　案件承办人员对当事人或者有关证明人的询问调查应当个别进行。询问前应当收集、核对被询问人的身份证明，并告知其权利和义务。  询问调查应当制作笔录，经被询问人确认无误后在笔录上逐页签名或者盖章。笔录如有差错、遗漏，应当允许其更正或者补充，更正或者补充部分应当由被询问人以签名、盖章或者押印等方式确认。  **第十七条**　案件承办人员应当收集与案件有关的原始证明材料作为证据。收集原始证明材料有困难的，可以提取复制件、影印件或者抄录本等，并由证据提供人标明“经核对与原件无误”。  收集、提取的证据应当注明出证日期、证据出处，并由案件承办人员、证据提供人签名或者盖章。  **第十八条**　案件承办人员在调查取证过程中，可以要求当事人或者有关证明人提供与案件有关的证明材料。根据需要可以采取录音、录像和拍照等方式收集证据。  **第十九条**　案件调查中发现的涉嫌假冒产品，可以交由被假冒的企业进行鉴别。经质量技术监督部门查证后，可以将企业出具的鉴别证明材料作为认定案件事实的证据。  出具证明材料的企业对其证明内容负责，并依法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二十条**　质量技术监督部门收集证据时，可以采取抽样取证的方法。  所抽样品需要检验、检测、检定或者鉴定的，应当委托具有法定资质的机构进行。检验、检测、检定或者鉴定结果应当告知当事人。法律、法规、规章对复检有规定的，应当同时告知当事人复检权利。  **第二十一条**　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质量技术监督部门可以对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证据采取先行登记保存措施。  采取或者解除先行登记保存措施，应当经质量技术监督部门负责人批准。  **第二十二条**　对于先行登记保存的证据，应当在7日内作出以下处理决定。逾期未作出处理决定的，先行登记保存措施自动解除。  （一）根据情况及时采取记录、复制、拍照、录像等证据保全措施；  （二）根据有关法律、法规规定采取查封、扣押、封存等行政强制措施；  （三）违法事实不成立，或者违法事实成立但依法不应当予以查封、扣押、封存的，解除先行登记保存措施。  **第二十三条**　质量技术监督部门在办理行政处罚案件中，可以依据法律、法规、规章的规定采取查封、扣押、封存等行政强制措施。  经调查，不需要继续采取行政强制措施的，应当及时解除行政强制措施。  采取或者解除行政强制措施，应当经质量技术监督部门负责人批准。  **第二十四条**　调查取证过程中，出现当事人拒绝接受调查、当事人或者有关人员拒绝在相应执法文书上签名或者盖章等情况的，案件承办人员应当在执法文书或者其他有关材料上载明情况，并以录音、录像等视听资料加以证明。  必要时，案件承办人员可以邀请第三方作为见证人。  **第二十五条**　因涉嫌违法的自然人死亡或者法人、其他组织终止，并且无权利义务承受人等原因，致使调查无法继续进行的，案件承办机构可以报请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批准后，决定终止调查并结案。  **第二十六条**　各级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设立行政处罚案件审理委员会，实行案件集体审理制度。  行政处罚案件的审理，按照《质量技术监督行政处罚案件审理规定》的有关规定执行。  **第二十七条**　对当事人拟作出行政处罚的，应当告知当事人违法事实、处罚依据及理由、处罚种类及幅度，并告知当事人依法享有的陈述、申辩、听证等权利。  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充分听取当事人的陈述和申辩，不得因当事人申辩而加重处罚。  **第二十八条**　质量技术监督部门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应当进行复核。案件复核按照《质量技术监督行政处罚案件审理规定》的有关规定执行。  **第二十九条**　质量技术监督部门对当事人依法给予行政处罚的，应当制作行政处罚决定书，载明当事人姓名或者名称及地址、违法事实及证据、处罚依据及理由、处罚种类及幅度、处罚履行方式及期限、救济途径及期限、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名称及日期等内容，并加盖作出行政处罚决定的行政机关的印章。  行政处罚决定书应当自作出之日起7日内按照本规定第七章的有关规定送达当事人。  **第三十条**　质量技术监督部门实施行政处罚，依法责令当事人改正或者限期改正违法行为。  责令限期改正的期限按照法律、法规、规章或者技术规范的规定执行。法律、法规、规章或者技术规范没有规定的，改正期限一般不超过30日；确有必要超过30日的，应当根据案件实际情况确定，并报请质量技术监督部门负责人批准。  **第三十一条**　因案件管辖或者其他依法需要报请上级质量技术监督部门决定的案件，下级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及时上报。上级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自接到上报材料之日起15日内作出决定。  **第三十二条**　质量技术监督部门办理行政处罚案件，应当自立案之日起3个月内作出处理决定。因案情复杂不能按期作出处理决定的，经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延长30日。案情特别复杂，经延期仍不能作出处理决定的，应当报请上一级质量技术监督部门批准，适当延长办案期限。  案件办理过程中听证、公告、检验、检测、检定或者鉴定以及发生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的，所需时间不计入前款规定期限。  **第四章　行政处罚的听证程序**  **第三十三条**　质量技术监督部门拟作出以下行政处罚决定之一的，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自告知次日起算，当事人享有在3日内提出听证申请的权利：  （一）责令停产停业的；  （二）吊销质量技术监督部门核发的许可证的；  （三）处以较大数额罚款的。  前款（三）项规定的较大数额罚款的标准，按照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等有关规范性文件的规定执行。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等有关规范性文件未做规定的，较大数额罚款的标准为3万元以上（含3万元）。  **第三十四条**　质量技术监督部门设立的行政处罚案件审理委员会下设办公室（以下简称案审办），负责听证的具体组织工作。  **第三十五条**　当事人要求听证的，应当以书面形式提出听证申请；当事人口头提出申请的，案审办应当将当事人基本情况、听证请求事项以及事实和理由记录在案，并由当事人签名或者签章。  当事人逾期未提出听证申请的，视为放弃听证的权利。  **第三十六条**　质量技术监督部门应当自接到当事人听证申请之日起15日内，按照以下要求组织听证：  （一）确定听证主持人和记录员。听证主持人由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指定非本案承办人员担任，听证记录员由案审办有关人员担任。  （二）确定听证参加人。听证参加人包括案件承办人员以及当事人。当事人可以委托1至2名代理人参加听证，委托代理人参加听证的，应当提交书面委托书。  （三）确定听证主要内容。案审办向听证主持人提交当事人基本情况、违法事实、证据、拟处罚意见以及听证申请等有关材料。  （四）确定听证时间和地点。案审办应当在举行听证的7日前，将听证的时间、地点通知当事人。  **第三十七条**　当事人在举行听证之前，提出撤回听证申请的，应当准许，并记录在案。  当事人无正当理由不出席听证的，视为撤回听证申请。  **第三十八条**　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的案件，听证会应当公开举行。听证会按照以下程序进行：  （一）主持人宣布听证会纪律；  （二）核对听证参加人姓名、年龄、身份，告知听证参加人权利、义务；  （三）案件承办人员提出当事人违法事实、证据以及处罚意见；  （四）当事人进行申辩和质证；  （五）主持人宣布听证会结束。  **第三十九条**　听证主持人负责维持听证会秩序，保障听证参加人依法行使陈述、申辩的权利；同时享有询问听证参加人的权利。  当事人或者其委托代理人无正当理由放弃申辩和质证权利退出听证会的，主持人可以宣布听证终止。  **第四十条**　听证会结束后，听证笔录应当当场交听证主持人以及听证参加人审核无误后签名或者盖章。  案审办应当将听证笔录和案件有关材料一并提交行政处罚案件审理委员会进行重新审理。  **第四十一条**　质量技术监督部门对未依法告知当事人听证权利或者未依法组织听证的，其作出的行政处罚决定无效。  **第五章 行政处罚的简易程序**  **第四十二条**　对于违法事实清楚、证据确凿，依法应当对公民处以五十元以下、对法人或者其他组织处以一千元以下罚款或者警告的行政处罚的，可以当场作出行政处罚决定。  **第四十三条**　案件承办人员在实施当场处罚时，应当收集必要的物证、书证、当事人陈述、现场笔录等证据，并使用统一的当场处罚决定书。  前款规定的当场处罚决定书应当载明当事人的违法事实、行政处罚依据、罚款数额、时间、地点以及行政机关的名称，并由案件承办人员及当事人签名或者盖章后，当场交付当事人。当事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案件承办人员应当注明情况。  **第四十四条**　案件承办人员实施当场处罚，当场收缴罚款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有关规定执行。  **第四十五条**　案件承办人员适用简易程序实施当场处罚的，应当符合本规定第十三条、第二十七条、第五十六条的规定。  **第六章　行政处罚的执行和结案**  **第四十六条**　行政处罚决定书一经送达，即发生法律效力。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期间，行政处罚决定不停止执行，法律另有规定的除外。  **第四十七条**　当事人未按行政处罚决定规定的期限缴纳罚款的，质量技术监督部门可以每日按罚款数额的百分之三加处罚款。  **第四十八条**　当事人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质量技术监督部门可以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的期限为当事人的法定起诉期限届满之日起180日内。  **第四十九条**　当事人确有经济困难，需要延期或者分期缴纳罚款的，应当提出书面申请。经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延期或者分期缴纳。  **第五十条**　对罚没物品的处置，按照《质量技术监督罚没物品管理和处置办法》的有关规定执行。  **第五十一条**　对依法解除登记保存或者行政强制措施，需要返还涉案物品的，应当及时予以返还。  当事人下落不明或者无法确定涉案物品所有人的，应当采取公告方式告知领取。公告期满仍无人领取的，经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批准，将涉案物品上缴或者依法拍卖后将所得款项上缴国库。  **第五十二条**　有以下情形之一的，经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中止行政处罚决定的执行：  （一）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期间，依法需要中止执行的；  （二）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人民法院裁定中止执行的；  （三）其他需要中止执行的。  **第五十三条**　因自然人死亡或者法人、其他组织终止，并且无权利义务承受人等原因，致使行政处罚决定无法继续执行的，经质量技术监督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终止行政处罚决定的执行。  **第五十四条**　有以下情形之一的，经质量技术监督部门负责人批准后，予以结案：  （一）行政处罚决定执行完毕的；  （二）经人民法院判决或者裁定后，执行完毕的；  （三）不予行政处罚的；  （四）案件移送有管辖权部门或者司法机关的；  （五）决定终止调查的；  （六）决定终止行政处罚决定执行的。  **第五十五条**　质量技术监督部门对以下案件，应当在结案后15日内向上一级质量技术监督部门报告、备案：  （一）上级质量技术监督部门督办的案件；  （二）指定管辖的案件；  （三）在本行政区域内有重大影响的案件；  （四）向司法机关移送的案件；  （五）经人民政府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结案的案件。  质量技术监督部门对于本级人民政府交办的案件或者在本行政区域内有重大影响的案件，应当及时向本级人民政府报告。  **第五十六条**　案件办理过程中形成的材料，应当按照档案管理的有关规定立卷存档。  **第七章 期间与送达**  **第五十七条**　期间包括法定期间和质量技术监督部门指定的期间。  期间以时、日、月、年计算，期间开始的时和日不计算在内。  期间届满的最后一日是节假日的，以节假日后的第一日为期间届满的日期。  期间不包括在途的时间，执法文书在期满前交邮的，不算过期。  **第五十八条**　送达执法文书应当使用送达回证，由受送达人在送达回证上载明收到日期，签名或者盖章。  受送达人在送达回证上的签收日期为送达日期。  **第五十九条**　送达执法文书，应当直接送交受送达人。受送达人是公民的，本人不在时交与其同住的成年家属签收；受送达人是法人或者其他组织的，应当由法人的法定代表人、其他组织的主要负责人或者该法人、组织的委托代理人、负责收件的人签收。签收日期为送达日期。  **第六十条**　受送达人拒绝接收执法文书的，送达人可以邀请有关基层组织等第三方的见证人员到场，说明情况，在送达回证上载明拒收事由和日期，由送达人、见证人签名或者盖章，把执法文书留在受送达人的住所，即视为送达。  留置送达应当采用录音、录像等方式记录送达情况。  **第六十一条**　直接送达执法文书有困难的，可以委托基层质量技术监督部门或者有关基层组织代为送达，也可以邮寄送达。  邮寄送达的，以邮寄回执上载明的收件日期为送达日期。  **第六十二条**　采取本规定第五十九条、第六十条、第六十一条规定的方式无法送达的，可以公告送达。公告送达，可以在受送达人原住所地张贴公告，也可以根据实际情况，通过报纸、电视或者互联网等新闻媒体发布公告。自发出公告之日起，经过60日，即视为送达。  公告送达，应当在案卷中载明公告送达的原因和经过。  **第八章 附 则**  **第六十三条**　法律、法规授权的质量技术监督执法机构办理行政处罚案件，依照本规定执行。  **第六十四条**　本规定由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负责解释。  **第六十五条**　本规定自2011年7月1日起施行。原国家技术监督局1990年7月16日公布的《技术监督行政案件办理程序的规定》、1995年12月8日公布的《技术监督行政案件现场处罚规定》、1996年9月18日公布的《技术监督行政案件听证工作规则》同时废止。 |